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3. 1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3월 5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0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4. 3. 10)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김 중 하

가. 제안이유

마포개발공사의 사업이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구 자치사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공단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농수산물시장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0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마포구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토록 규정함.(안 제4조)

0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0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함.(안 제8조)

0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규정함.(안 제9조)

0 구청장은 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안 제18조)

0 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19조)

0 공단의 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마포문화체육센터, 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의 관리·운영 및 기타 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7조)

0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토록 규정함(안 제32조)

0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안 제39조)

0 이 조례의 시행으로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설되는 공단에서 포괄 승계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0 공단설립등기일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0 동 조례안은 당초 공사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주로 구 업무 대행 사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포개발공사를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0 동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조문이 본칙 제7장 제48조 및 부칙 제5조로 배열되었으며, 본칙 제1장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공단의 자본금 및 정관 등을 정한 총칙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공사채를 공단채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공사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동일하며, 제2장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소관국장 2인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음.

0 제3장에는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추천위원위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는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제·견인보관소·마포문화체육쎈터·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의 관리·운영사업과기타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0 제5장에는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6장에는 공단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장에는 보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에는 시행일과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공단설립등기일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공단설립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대상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적절한 사업으로 사업수지면에서도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높고 사업성격상 공공복리증진 등 공공성 위주로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비교분석 결과보고와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구의 자치사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마포개발공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직영체제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포구와 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공단이 설립되면 현 공사의 채권·채무와 조직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사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공단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타 자치단체의 선례와 마포개발공사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동 조례안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공단이 추구하는 내용이 목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공단에서도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준칙안 내용과 같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제1항에서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21조와 안 제27조제6호에서는 조문을 이해

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2조의 권리·의무의 승계시기도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승계되도록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설되는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부칙 제2조 규정을 "공단설립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0 답변요지(김중하 교통행정과장) :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신설합병일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해서 바로 지위를 인수하는 것임.

0 질의요지(김효철 위원) : 공사를 해체하고 공단을 신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0 답변요지(김영식 건설교통국장) : 법의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타 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사례를 보면 아주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직을 경영합리화 시키는 차원이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0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마포개발공사에서 5억 9,100만원이라는 대우펀드를 들었는데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었을때 처리는?

0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여 공단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음.

0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공사에서 공단이 될 경우 장·단점은?

0 답변요지(김영식 건설교통국장) : 공사는 수익을 내는 장점이 있지만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통제하는데서는 공단이 좋음.

0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공기업팀을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기구 개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0 답변요지(김영식 건설교통국장) : 총무과로 기구개편안을 통보하였음

0 질의요지(유남열 위원) : 마포개발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 3. 10 오윤수 위원 외1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공단이 추구하는 내용이 목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공단에서도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준칙안 내용과 같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제1항에서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21조와 안 제27조제6호에서는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2조의 권리·의무의 승계 시기도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승계되도록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0 총칙중 제1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0 제4조 "자본금은"을 "수권자본금은"으로

0 제13조제3항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이사가"를 "감사가"로

0 제19조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으로 구성한다"로,

0 제21조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를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로,

0 제27조제6호 "기타"를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로,

0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는 "공단 설립 등기일에"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4. 3. 10.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0 동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공단이 추구하는 내용이 목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공단에서도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준칙안 내용과 같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제1항에서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21조와 안 제27조제6호에서는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2조의 권리·의무의 승계시기도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승계되도록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0 총칙중 제1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0 제4조 "자본금은" 을 "수권자본금은" 으로

0 제13조제3항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이사가" 를 "감사가" 로

0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으로 구성 한다" 로,

0 제21조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를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로,

0 제27조제6호 "기타" 를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로

0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는 "공단 설립 등기일에" 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0 총칙중 제1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0 제4조 "자본금은" 을 "수권자본금은" 으로

0 제13조제3항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이사가" 를 "감사가" 로

0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으로 구성 한다" 로,

0 제21조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를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로,

0 제27조제6호 "기타" 를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로

0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는 "공단 설립 등기일에" 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수권자본금은----------. ②----수권자본금----------.
제13조(이사회) ① - ② (생 략)	제13조(이사회)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가----------.
④ - ⑥ (생 략)	④ - ⑥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 3. (생 략)	1. - 3. (원안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
제27조(사업) (생 략)	제27조(사업) (원안과 같음)
1. - 5. (생 략) 6. 기타 구가 위탁하는 사업 7. (생 략)	1. - 5. (원안과 같음) 6.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 7. (원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설되는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설립 등기일에 ---------- ----------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개발공사의 사업이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구 자치사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공단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농수산물시장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마포구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토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규정함.(안 제9조)

마. 구청장은 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안 제18조)

바. 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19조)

사. 공단의 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마포문화체육센터, 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의 관리·운영 및 기타 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7조)

아.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토록 규정함.(안 제32조)

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안 제39조)

차. 이 조례의 시행으로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설되는 공단에서 포괄 승계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카. 공단설립등기일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5조)

3. 근거법령

가. 지방지치법(2003.7.18 법률 제6927호)

나. 지방공기업법(2002.3.25 법률 제6665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필요함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3.2.13~3.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4.3.5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 ·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 감독부서 및 사업부서 소관국장을 포함한

구의 국장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공무원(구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구의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단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 업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2.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사업
3.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사업
4.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사업
5.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사업
6. 기타 구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 무 회 계

제2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0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

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수입 및 정산)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기타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조성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금) ① 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일시차입금)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 독

제39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보 칙

제42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재산의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공인의 비치)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설되는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공단에 설립준비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며, 결산시 일괄정산 한다.

③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단설립등기일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